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7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총괄 체계 검토	3
V . 주요 항목별 검토	8
1. 목적(안 제1조)	8
2. 정의(안 제2조)	1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우주활동의 국가책임(안 제3조·제4조)	14
4. 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18
5. 국가우주위원회(안 제8조)	23
6.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안 제9조·제10조)	27
7.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17조·제18조)	3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30.

다.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의 진흥, 우주산업의 육성 및 우주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우주항공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함(안 제9조).
- 라.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우주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주거, 우주산업활동, 우주자원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우주교통관리 등 우주활동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바.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IV. 총괄 체계 검토

- 제정안은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임.
- 제정안은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이 우주개발 진흥,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것임.
-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별도의 장을 구성하지 않고 제1조(목적)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기본적인 법 체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부터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까지 전략, 계획 수립 및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총괄기구 등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부터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까지 우주정책 및 시책 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

성 등)에서 우주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하 제23조(과태료)까지 보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제정안을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과 비교해보면, 제2조(정의)는 거의 유사하고, 제8조(국가우주위원회), 제9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제17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은 「우주개발 진흥법」을 삭제하고 제정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임.

□ 또한,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부터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는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의 상위 규정으로서, 이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우주자원”, “우주폐기물”에 대한 정의 외에 “우주개발” 등 다른 정의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동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제4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도록 함
제6조(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현행법상 존재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을 “분야별 기본계획”으로 함.

제8조(국가우주위원회)	부칙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를 삭제하고 제정안에 규정
제9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	부칙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삭제하고 제정안에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내용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일함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과 동일함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3조(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4조(우주활동 육성 등)	
제15조(인공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	
제17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칙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를 삭제하고 동일 내용을 제정안에 규정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부칙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유사 내용을 제정안에 규정
제1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제23조(과태료)	
부 칙	

□ 이렇게 제정안이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조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주개발 진흥법」과 별
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제정안이 제시

하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이후 우주항공기술·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서 우주항공정책에 대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가 우주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주개발 진흥법」의 제정(2005.5.31.) 당시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협약에 규정된 국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5월에 개청하였고,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면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음.

□ 우주항공청도 그간 부재하였던 우주개발 분야 기본법을 제정하

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제정안이 제시하는 우주 관련 기본법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 우주 거버넌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주항공청은 이에 대해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항공 양 분야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서 우주 분야의 기본법이나 정책 취지에 맞게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통합 규율할 필요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우주와 항공정책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수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우주항공청은 범부처 정책 조정 강화를 위해 우주안보와 민군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기본법에서 규율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결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와 항공 분야를 통합 규율하는 「우주항공 기본법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병합심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V. 주요 항목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가. 주요 내용

- ☐ 제정안 제1조는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 진흥, 우주산업 육성, 우주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안전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의 진흥, 우주산업의 육성 및 우주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 안 제1조의 경우, 국가 우주 거버넌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항공 분야에 대한 내용이나 우주안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우주항공청은 이에 대해 우주안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도 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1조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국방부는 우주안보의 강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정의(안 제2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2조는 우주개발, 우주개발사업, 우주물체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4. “우주자원”이란 자연우주물체에서 추출된 자원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5. “우주폐기물”이란 임무가 종료되거나 기능이 정지된 인공우주물체와 그 파편을 말한다.
6.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제 정 안

-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8.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2조에서 우주개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우주자원”과 “우주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제외하면,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1)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의와 동일함.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개발·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공우주물체
 -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 이러한 정의 규정이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실체적인 규정이 최소화되는 기본법의 성질을 고려할 때, 「우주개발 진흥법」과 중복되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며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거나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 또한, 정의규정의 취지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체적인 규정이 적은 기본법에서는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상황이 적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의미하고,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증보판)」, 2024.5., p.927.

란 및 분쟁을 방지³⁾하는 기능을 함.

-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 정의의 개념 및 실체적인 개별법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주개발 진흥법」과 중복되는 정의규정을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하게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증보판)」, 2024.5. , p.24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우주활동의 국가책임(안 제3조·제4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1항에서 국가는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정안 제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4조는 국가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 국가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제 정 안
국가에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주 이용 및 우주항공 관련 기술·산업 발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우주활동에 대한 최종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조제1항은 국가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평화적 이용” 표현을 법 규정에 명시할 경우 정당한 군 위성 활동, 안보적 우주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안 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동일하게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 산업 기반 조성의 책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책무를 부여하지 않고,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활용(제18조의2),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제18조의9),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제20조) 등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주체로 규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법에서 포괄적인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4조에서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최종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⁴⁾는 정부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한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정부가 일차적 손해배상을 하고, 우

4)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주물체 발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4조는 우주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개별법 및 우주책임협약에서 우주손해배상의 일차적 배상주체만을 국가로 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도 「우주손해배상법」에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어 최종책임주체가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4. 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가. 주요 내용

- 안 제6조는 20년 단위로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항공전략에 따라 분야별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우주개발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성정보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말함.
- 또한,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안 제7조제1항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말함.

제 정 안

제6조(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① 국가는 20년 단위로 국가우주항공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분야 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분야 국제협력 및 국가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우주항공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우주항공 개발 및 이용의 단계별 발전전략
3. 우주안보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전략
4.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전략
5.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는 5년마다 국가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가기본전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하 “분야별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위성정보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3.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4. 우주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기본계획

② 분야별 기본계획등은 국가기본전략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기본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6조는 국가가 우주항공 분야의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국가우주항공전략”에 따라 현재 개별법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임.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6조제2항 각 호는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므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법규정에 명시할 경우 정당한 군 위성활동, 안보적 우주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시 고려사항에 국가정보원은 “우주항공분야 산업·과학기술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둘째, 안 제6조제1항은 “국가우주항공전략”을 “국가기본전략”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약칭 사용으로 인한 단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고, 약칭을 사용할 경우 “우주항공”에 대한 전략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약칭보다 본래의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함⁵⁾.

□ 셋째, 안 제7조제1항 각 호는 현재 개별법상 존재하는 기본계획·종합계획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에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형식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는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국가우주항공전략에 맞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개별 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7조제3항을 문언상으로 해석하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증보판)」, 2024.5., p.231.

제정안의 취지와 달리 제정안에서 지칭하는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개별법상 기본계획을 “1.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으로 규정하여 안 제7호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가우주위원회(안 제8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8조는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

제 정 안

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 제8조는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⁶⁾의 “국가우주위원회”를 삭제하고 이를 제정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과 다른 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가되었음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전에 해당하

-
- 6)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므로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나열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에서 규율할 국가 우주 거버넌스의 범위에 따라 심의사항의 추가·변경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우주안보 및 민군협력에 관련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국방분야에 대한 예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안 제9조·제10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9조는 우주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두려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우주개발총괄기구에 대한 출연금 등의 운영재원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 ①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구(이하 “우주개발총괄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3.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4. 우주항공분야 산학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주항공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우주개발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④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⑤ 우주개발총괄기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정 안

⑦ 우주개발총괄기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아닌 자는 우주개발총괄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① 우주개발총괄기구는 국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우주개발총괄기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 제9조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7)을 삭제하고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이고, 제정안 제10조는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운영재원을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 제9조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⁸⁾·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⁹⁾의 입법례에 따라 거의 유사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정안 제10조는 같은 법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¹⁰⁾과 거의 동일한 규정임.

□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의

-
-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인만큼 법문언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조에 맞추어 국가 통합 정책 추진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명칭으로 제안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기술인증 및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7.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17조·제18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17조는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8조는 우주사고 발생 시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제 정 안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 제17조는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¹¹⁾을 삭제하고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제정안 제18조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¹²⁾를 삭제하고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우주사고에 따른 실체적인 배상책임과 우주사고에 관한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11)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2)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기본법으로서 실체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므로, 우주사고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이미 규정으로 두고 있고, 「우주손해배상법」 등 다른 개별법이 이를 인용하는 규정이 있어, 현행법체계를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어 보임.
- 우주항공청 및 법무부는 우주사고조사단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우주개발 진흥법」과 동일하게 인공우주물체를 “제작”하는 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36
